

## 채용 공고

군포시로부터 (사)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에서 수탁하여 운영하는 「군포시가족센터」에서는 열정과 도전으로 함께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2023년 8월 1일

### 군포시가족센터장

#### 1.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

직종	채용분야	인원	주요업무	응시자격
일반직	사무국장 (재공고)	1명	· 가족사업 및 센터 실무 총괄	- 필수사항: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- <b>가족센터 근무경력자 우대</b> -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(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) - 관련사업 4년 이상 근무경력자(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) - 관련사업 6년 이상 근무경력자 *관련사업: 가족상담, 가족교육, 가족문화, 다문화가족지원, 가족역량강화, 사회복지,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
계약직	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운영전담	1명	·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관련 업무 · 기타행정계반 업무 등	- 사회복지사, 건강가정사, 요양보호사, 간호조무사 등 -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- 관련사업 근무경력자 우대
계약직	언어발달 지도사 (재공고)	1명	· 언어발달지원사업 ·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	- 1순위 : 언어치료학과,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·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이상 소지자(졸업예정자 포함) - 2순위 :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이상 (학사이상) 혹은 초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,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한국어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(필수이수시간 120시간)을 이수한 자 ※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 사항 없음.
일반직	가족상담 담당팀원 (재공고)	1명	· 가족상담사업 · 이혼전·후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	- 상담심리학, 심리학, 사회복지학, 가정학, 교육학 등 - <b>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</b> -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-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

			<p>·상담 관련 행정 제반 업무 등</p>	<p>근무 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※ 관련 전문 학회 기준 : 한국연구재단에 등록, 한국연구재단 등재 (후보)이상의 학술지 발간,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(자격증 명칭에 '가족'명시) 및 사단법인 -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-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
<p>지원자격 공통 사항</p>			<p>-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-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는 자 -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자 -다문화가정(이민자, 이민자 배우자, 자녀 등) 우대</p>	
<p>결격 사유 조회</p>	<p><b>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</b>  <b>■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 3 제1항 각호</b>  <b>■ 취업제한 내용 :</b>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 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 <b>■ 「노인복지법」 제 39조의 17 제1항 각호</b>  <b>■ 취업제한 내용 :</b>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(최대10년)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  <b>■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2 제2항</b>  1.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<b>■ 「사회복지사업법」상 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함</b></p>			

## 2. 근무조건

구분	근무시간	보수 및 공통사항
사무국장	- 월~금요일(주5일), 09:00~18:00 * 주말 및 야간 근무 시 대체휴무	-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함 - 경력자 우대
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자	- 월~금요일(주5일), 09:00~18:00 * 주말 및 야간 근무 시 대체휴무 - 계약기간: ~ 2024. 12. 31.	- 정부(지자체) 인건비 지원 시설 및 가족사업지침 기준 - 경력자 우대 - 계약 연장 가능
언어발달 지도사	- 월~금요일(주5일), 09:00~18:00 * 주말 및 야간 근무 시 대체휴무 - 계약기간: ~ 2023. 12. 31.	-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함
가족상담 전문인력	- 월~금요일(주5일), 09:00~18:00 * 주말 및 야간 근무 시 대체휴무	-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함

## 3. 전형방법 및 일정

### ○ 전형방법

구분	대상자	평가항목	심사방법	합격기준	동점자발생시 처리
1차 서류전형	지원자	·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	- 관련경력 및 직무 분야 자격증 소지 - 업무의 적합성 등	서류전형 고득점자 순	- 동점자 전원 면접
2차 면접전형 및 실기	서류전형 합격자	·업무능력의 전문성 ·관련 사업 경험여부 ·조직이해 등 ·컴퓨터 활용 능숙도 ※사무국장은 면접 시 직무수행계획서 발표 예정	- 개인면접 또는 집단면접 *면접 전 필기·실기 시험 진행 예정	면접전형 고득점자 순	1순위: 다수의 면접위원에게 상위 점수를 받은 자 2순위: 사회취약계층

○ 채용일정

구분	일정	비고
공고기간	2023. 8. 1.(화) ~ 2023. 8. 14.(월)	* 사무국장은 응시자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면접 예정임
원서접수기간	2023. 8. 1.(화) ~ 2023. 8. 14.(월)	서류마감 <b>2023. 8. 14.(월) 18:00까지</b>
1차 서류 합격자 발표	2023. 8. 16.(수)	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
2차 면접시험일시	2023. 8. 17.(목, 11:00)	면접장소: 군포시가족센터 3층 집단상담실 (부곡동 1194)
최종합격자 발표	2023. 8. 17.(목, 예정)	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
임용일	2023. 8. 21.(월, 예정)	<b>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범죄경력조회, 건강진단 검사 결과 등 제반서류 확인 후 채용확정</b>

※ 상기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4. 접수방법

- 접수방법: E-mail 접수(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)
- 접 수 처: gunpomfc@hanmail.net
- 문 의: ☎ 031-395-1811(운영지원팀)

5. 응시자 제출서류

- 응시원서 1부 [붙임 1]
  - 자기소개서 1부 [자유양식]
  -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[붙임 2]
  - **직무수행계획서 1부 (사무국장만 해당) [자유양식]**
  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경력증명서(해당자,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만 인정) 각 1부
  - 해당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각 1부(해당자)
  -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관련 증빙자료 각 1부
- ※ 응시지원서에 기재된 증명서류 허위 및 미제출시 서류전형 합격을 취소함

■ 합격 후 추가 제출서류

- 채용신체검사서, 주민등록 등본
- 아동학대, 노인학대 범죄경력조회 증빙서류

## 6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사항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**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신원조회 및 건강검진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.**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, 미달할 경우(공고 기간 연장),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 합격자 포기 시 차순위 득점자가 채용될 수 있습니다.
-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응시 요건 중 경력기간 및 자격 취득 예정일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.
-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: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『관련 법 시행령 제4조(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)』에 의거 **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**의 기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,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『개인정보 보호법』에 의해 관련서류가 파기됨을 알립니다.  
※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경우 기관에서 채용서류를 파기함. (최종 합격자의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)
- 제출서류는 순서에 맞게 해 주시고 사업 관련 경력증명서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 
(제출서류 응시원서 파일 내에 첨부요망)
- 기관 자체양식 사용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.